

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2. 10. .

제 출 자 : 파 주 시 장

☐ 제안이유

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가 설립 운영하는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파주시이사장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

☐ 주요골자

가.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(안 제2조, 제3조)

-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 설치 운영
- 위원회의 구성 인원 및 추천 대상 자격
- 이사장 추천위원회 구성 요건

나.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존속 및 회의(안 제5조, 제6조)

- 이사장추천위원회 존속 기간
- 위원회 소집 및 의결 요건

다. 이사장후보의 추천(안 제8조)

- 이사장후보 추천 대상 자격 및 추천 인원
- 이사장후보의 재추천 사유

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가 설립 운영하는 공단의 이사장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파주시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원회의 설치) 시장은 파주시가 설립한 공단의 이사장후보자를 추천 받기 위하여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 운영한다.

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.

1. 시장이 추천하는 자 2인
2.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
3. 당해 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

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.

1. 경영전문가
2. 경제관련단체의 임원
3.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
4. 공인회계사
5.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
③당해 공단의 임·직원(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) 및 시 소속 공무원(시의회의원을 포함한다)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.

④시장은 이사장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이사장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, 시의회와 당해 공단의 이사회에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

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의 추천요구를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.

제4조(위원장)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.

제5조(위원회의 존속) 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이사장에 임명되는 때 까지 존속한다.

제6조(회의) ①위원회 회의는 시장이 소집한다.

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제7조(간사)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

②간사는 시의 공기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과장이 된다.

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제8조(이사장후보의 추천) ①위원회는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이사장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.

②위원회는 이사장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.

③위원회는 이사장후보추천대상자를 의결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④시장은 추천된 후보가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단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이사장후보의 재 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사장후보를 재추천 하여야 한다.

⑤위원회는 이사장후보의 모집·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

제9조(실비보상)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사무협조) ①위원회는 이사장후보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기관 또는 당해 공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이나 공단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으로 임명된 자는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이사장후보로 추천되어 임명된 것으로 본다.

소관 실·과·소		기획담당관실 ☎ 940-4998
입안자	기획 담당관	박 현 재
	경영지원담당	윤 명 채
	담 당 자	윤 희 기

지방공사·공단 사장추천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표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○○시·도(시·군·구)가 설립 운영하는 공사·공단(이하 “공사”라 한다) 사장 또는 원장 및 이사장(이하 “사장”이라 한다)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○○시·도(시·군·구)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원회의 설치) 시·도지사(시장, 군수, 구청장)은 ○○시·도(시·군·구)가 설립한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 받기 위하여 ○○시·도(시·군·구)공사사장추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 운영한다.

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. 다만, 공사를 최초로 설립하는 때에는 시·도지사(시장, 군수, 구청장)가 추천하는 자 4인과 시·도(시·군·구)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.

1. 시·도지사(시장, 군수, 구청장)가 추천하는 자 2인
2. 시·도(시·군·구)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
3. 당해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

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.

1. 경영전문가
2. 경제관련단체의 임원
3.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
4. 공인회계사
5.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
③당해 공단의 임·직원(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) 및 시·도(시·군·구) 소속 공무원<(시·도, 시·군·구)의회의원을 포함한다>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.

④시·도지사(시장, 군수, 구청장)는 사장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이 사장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, 시·도(시·군·구)의회와 당해 공사의 이사회에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.

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의 추천요구를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.

제4조(위원장)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.

제5조(위원회의 존속) 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사장에 임명되는 때 까지 존속한다.

제6조(회의) ①위원회 회의는 시·도지사(시장, 군수, 구청장)가 소집한다.

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제7조(간사)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

②간사는 시·도(시·군·구)의 공기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과장이 된다.

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제8조(사장후보의 추천) ①위원회는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사장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.

②위원회는 사장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.

③위원회는 사장후보추천대상자를 의결한 때에는 즉시 시·도지사(시장, 군수, 구청장)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④시·도지사(시장, 군수, 구청장)는 추천된 후보가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사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사장후보의 재 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사장후보를 재 추천하여야 한다.

⑤위원회는 사장후보의 모집·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

제9조(실비보상)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사무협조) ①위원회는 사장후보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기관 또는 당해 공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이나 공사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으로 임명된 자는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장후보로 추천되어 임명된 것으로 본다.